

# 2016년 제6회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주요내용

## 조 례 안

### [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##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맞추어 관련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 및 일부 용어를 세부적으로 개정·보완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계약심의위원회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(안 제2조)
  -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
  - 위원회 위원 성별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 내용 반영
- 나.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삭제하고, 계약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 대상을 추가 신설 (안 제4조)
- 다.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관련한 용어 정리 및 중복내용 삭제 (안 제6조)
- 라.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 (안 제11조)
- 마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 (안 제11조의2)
- 바.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 (안 제12조)
- 사.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“자문”에 관한 사항 용어정리 및 삭제 (안 제5조 ~ 안 제9조)
- 아.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“20,000원”을 “30,000원”으로 인상(안 별표)

# [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## 1. 개정 이유

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이 있는 조항과 별표를 관련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, 수수료 반환 규정이 없어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수수료 징수와 관계없는 인용조항 삭제(안 제1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수수료 징수와는 관계없는 규정으로 삭제

나.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(안 제6조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 →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
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→
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-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56조 →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제36조

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

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

다.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

- 제증명 등이 발급·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.

라.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 수수료 종류 일부 삭제(안 별표)

-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「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」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단체 변경등록신청 수수료 삭제

# [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]

## 1. 개정 이유

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인 「산림보호법」과 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의 규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위원회 운영업무에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(안 제2조)
- 다.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
# [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## 1. 개정 이유

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,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등(가산금)을 징수할 수 있도록 「주차장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근거를 마련하며, 조례에 인용된 법률 제명 및 약칭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주체(구청장 및 관리수탁자) 및 「주차장법」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 (안 제2조)
- 나.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(관리 수탁자)에 대한 용어 정비 (안 제4조)

다. 별표 제목 및 법률 인용 제명 정비 (안 별표)

- 노상·노외주차장 주차요금표 →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
- 「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 
→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## 규 칙 안

### [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원가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]

#### 1. 개정이유

계약심사 대상사업의 확대와 원가분석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완하여 계약심사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법령용어 등 정비(제명 및 안 제1조~8조, 안 제10조)

- 계약원가 심사 ⇨ 계약심사

나. 발주부서에 누락된 자연사박물관 추가 보완(안 제2조)

다. “기술용역”에 해당하는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 보완함(안 제3조)

라. 계약심사 대상사업 확대(안 제4조)

- 계약심사 제외사업 추정금액 변경 : 2천만원 미만 ⇨ 1천만원 미만

마.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회의 위원의 구성 인원, 자격, 임기, 위·해촉 기준 등 운영사항 기준 근거 마련(안 제8조)

바. 계약원가 분석 자문 및 참석 수당 근거 보완(안 제9조)